ABB 일반구매조건 부속 조건 (Domestic)

목 차

제 1 조 총칙
제 2 조 정의
제 3 조 개별계약의 성립
제 4 조 선급금
제 5 조 계약이행보증
제 6 조 납품
제 7 조 시험 및 검사
제 8 조 기자재의 생산 감독
제 9 조 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제 10 조 機資材代의 지급
제 11 조 계약의 변경
제 12 조 지체상금
제 13 조 단가계약
제 14 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 15 조 하자보증
제 16 조 계약금액 조정
제 17 조 사급 자재
제 18 조 금형(金型) 및 목형(木型)
제 19 조 사급 자재 및 木金型 등의 취급 및 처리
제 20 조 보수용(補修用) 부품의 공급
제 21 조 제조물 책임법

㈜ ABB 코리아(이하 “구매자”이라 함)와 (공급자) (이하 “공급자”이라 함)는 상호간 기자재의 매매 계약에 있어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 합의한다.

제 1 조 (총칙)

1-1 본 부속조건은 ABB 일반구매조건(2015-1)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ABB 일반구매조건(2015-1)의 일부로 구성된다.

1-2 어떠한 경우라도 ABB 일반구매조건(2015-1)이 본 부속조건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1-3 당사자 쌍방은 이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규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조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 "사급자재"라 함은 기자재의 제작 등에 필요하여 "구매자"이 "공급자"에게 유무상으로 지급한 재료, 부품, 반제품 및 제품 등의 일체를 말한다.

2-2 "계약문서"라 함은 구매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라 함), 일반구매조건, 특별조건, 발주서, 규격서, 견적서 및 기타 계약에 관한 문서를 총칭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개별계약의 성립)

3-1 "구매자"는 품명, 사양, 단가, 납기, 수량, 납품장소, 대금의 지급방법, 지급기일 및 기타 사항을 기재한 구매발주서 등의 문서에 의하여 개별계약의 청약(請約)을 하고, "공급자"은 이 청약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구매자

3-2 "공급자"는 "구매자"의 청약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매자"의 청약을 접수한 후 10 일 이내에 "구매자"에게 승낙 거부의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3-3 "구매자"는 납기가 세분되어 구매발주서 상에 납기를 분리 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구매발주서 상에 납기를 분리 기재하지 않고 발주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개별계약은 "구매자"가 품명, 수량, 납기, 납품장소 등이 명시된 별도의 문서를 발행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선급금)

4-1 개별계약에 의거 선급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공급자"는 "구매자"를 수익자(受益者)로, 보증기간이 납품일 까지 이며 보증금액이 선급금과 동일한 선급금 지급 이행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2 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은 다음에 한한다.

①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②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상장유가증권

③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 5 조 (계약이행 보증)

5-1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거나 4-2항에 규정된 기관에서 발행한 납품일 까지의 계약이행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을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가계약에 있어서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금액은 매회 별 이행 예정량 중 최대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5-2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공급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3 납품일자 또는 계약금액의 변경 시, "공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이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을 배서(背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증금 납부 시에는 동 기간내 증액(增額) 납부하여야 한다.

5-4 "공급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6 조 (납품)

6-1 "공급자"는 "구매자"의 "사장(社章)"을 표시한 기자재를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6-2 기자재의 성질상 용기 또는 포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급자"의 부담으로 제작한다.

6-3 납품에 따른 운반비, 보관비 등 기타 제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6-4 "구매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지시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을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급자"은 분할납품을 할 수 없으며 분할납품의 경우에도 납품회수는 지정된 회수 범위내에 한한다.

6-5 "공급자"는 "구매자"으로부터 교부 받은 사양서, 도면 등 일체의 서류를 납품 후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 7 조 (시험 및 검사)

7-1 ABB 일반구매조건(2015-1) 제8조 검사에 따라, 기자재의 검수 전에 발생한 기자재의 분실이나 훼손 또는 기자재 검수 시 시험으로 인한 변질이나 소모는 각각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7-2 시험 및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이 생겼을 경우 "공급자"은 "구매자"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 경과후의 반송, 폐기 등의 처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하되 이에 소요된 비용은 "공급자"이 부담한다.

7-3 검수가 완료된 기자재의 납품에 따른 수송기간은 검수 완료 후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도서지방 및 계약조건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실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

7-4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KS표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사정된 기자재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험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개발시험 대상품목은 별도 시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7-5 시험검사 항목이 인정시험(認定試驗)과 검수시험(檢受試險)으로 분리되어 있는 기자재는 인정시험 유효기간 중에는 검수시험 항목에 의한 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정시험 항목을 검수시험 항목으로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7-6 "구매자", "공급자" 쌍방의 사정에 의하여 입회검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매자"의 서면동의가 있으면 "공급자"의 자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자체검사 기자재의 납품 시, "공급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조 (기자재의 생산감독)

8-1 "구매자"는 계약 후 필요에 따라 "공급자"의 계약 기자재에 대한 생산감독 및 재료조사를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구매자"의 생산 및 납품에 대한 사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8-2 계약조건이나 규격서에 생산감독 또는 중간검사 사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공급자"는 사전에 생산계획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시점에 감독 또는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생산감독이나 중간검사를 요하는 사항은 이를 마치지 아니하고는 생산을 계속할 수 없다.

제 9 조 (안전관리 및 재해 보상)

9-1 "공급자"는 "구매자"으로부터 수주 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구매자"의 직원, "공급자"의 직원, 방문객 등의 안전 및 보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매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다음의 주요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공급자"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위험요소 파악 및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작업을 수행하기 전에 ①항에서 파악된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완화시키거나, 관리할 수 있는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예, 안전시설 설치, 안전 보호장구 착용 등)

③ "공급자"는 해당 작업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및 "구매자"의 안전보건관리규정에서 요구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실시 후 교육 이수에 대한 기록을 증빙서류로 유지하여야 한다. "구매자"이 요청할 시에는 이 증빙서류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구매자"가 안전보건에 관련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의 조처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이행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즉시 "구매자"의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2 "공급자"의 작업장에서 발생한 안전 및 산업 재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9-3 “공급자”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개인용 보호장구의 구입, 안전관리 교육, 산재보험 가입 등 일체의 안전비용은 단가 또는 계약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제 10 조 (機資材代의 지급)

10-1 “구매자”의 예산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간 내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대가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0-2 “구매자”은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급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10-3 계약상 분납으로 있거나 “구매자”의 필요로 분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공급자”은 분납 기자재에 대하여 대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0-4 잔금은 최종인수통보서 발급 후 지급한다.

10-5 설치 또는 성능시험 조건으로 구매하는 기자재는 실 설치비 또는 계약금액의 5% 해당 액을 설치 또는 성능시험 완료시까지 대가 지급을 유보한다. 다만. 설치완료 후 “구매자”의 사정으로 성능시험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제 보증서 또는 증권으로 대체 후 지급할 수 있다.

제 11 조 (계약의 변경)

11-1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가격명세 및 납기”에 의한다. 다만, 가격명세 미기재 납품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제 12 조 (지체상금)

12-1 “공급자”는 개별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기자재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 지체 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3을 지체상금으로 징수하며 당해 기자재대에서 공제한다.

12-2 분할납품 계약의 경우에는 각 분납 단위별로 분납금액의 1000분의 3을 12-1항에 따라 징수한다. 또한 “구매자”의 필요에 따라 분납단위 물량 중 일부분을 검사 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의 해당액은 지체상금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자재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12-3 “구매자”는 지체상금 징수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보증금 상당액 (면제된 계약보증금 포함)에 달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계약보증금을 “구매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다.

제 13 조 (단가계약)

13-1 단가계약에 있어서는 “구매자”가 계약조건 범위 내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인도지시서(引渡指示書)에 의거 납품하며 납품수량, 납품장소, 분할납품 가부, 기타 필요사항은 인도지시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3-2 “공급자”는 인도지시서 합계금액이 연간 추정 계약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을 제출한 경우에는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3 지체상금은 매 인도지시서 건별로 제12조에 의거 징수한다.

13-4 발주시기

① “구매자”의 소요발생 시기에 발주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주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내에 발주된 기자재는 계약기간 경과 후라도 “공급자”는 납품 의무를 진다.

13-5 연간 총 발주물량이 추정 계약물량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경우, “공급자”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미달 또는 초과를 이유로 수주를 거부할 수 없다.

제 14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14-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불이행이 있을 때 “구매자”는 계약보증금을 “구매자”에게 귀속시키고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할 수 있으며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한다.

① “공급자”의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부정이 있을 때

② 동일 계약 건으로 2회 이상 검수에 불합격되었을 경우

③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해약(解約)을 요구 하였을 때

④ “구매자”가 계약이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출, 기타 협조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고의로 지연 시켰을 때

⑤ “구매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시켰을 때

14-2 전 14-1항의 계약해제 및 해지에 대하여 “공급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14-3 전 14-1항의 경우 계약보증금의 “구매자”에의 귀속은 개별계약의 다른 조항에 의한 “공급자”의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거나 “구매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14-4 전 14-1항에 의거 계약의 해제 및 해지를 받은 “공급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14-5 전 14-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의 경우, 일부 검사합격품이 있을 때에는 잔여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4-6 전 14-1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 및 해지는 해제 또는 해지일 최소 2주전 문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4조의 1 발주 취소 및 축소

1-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 대한 발주를 취소하거나 축소한다

① 프로젝트가 “구매자”의 Customer 사정에 의해 취소되거나 축소된 경우,

②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사양 및 소요량 변경된 경우,

③ “공급자”의 공급가능물량이 계약 수량에 못 미치는 경우,

④ 기타 발주를 취소 또는 축소해야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1-2 “구매자”는 전 1-1항에 의하여 발주를 취소, 축소함에 있어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공급자”에게 서면에 의하여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통지한다. 당해 통지는 발주 취소일 또는 축소일의 2주 이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1-3 “구매자”와 “공급자”는 발주 취소 및 축소 통지일과 발주 취소 및 축소일 사이에 충분한 협의를 하되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해당 사유의 설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4 “공급자”가 발주의 취소, 축소로 인해 발생한 부당한 손해가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경우, “구매자”는 해당 귀책사유에 의한 “공급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한다. 단, 이 경우에도 “구매자”는 “공급자”의 통상의 손해로 볼 수 없는 특별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하자보증)

15-1 납품한 기자재의 규격과 품질의 보증을 위하여 “공급자”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기자재대에서 유보하거나 전 4-2항에 규정된 종류의 하자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15-2 개별계약에 명시된 하자보증 기간 중 납품 기자재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공급자”은 당해 기자재를 보수 또는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기자재의 보수 또는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공급자”는 당해(當該) 기자재대를 “구매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필요에 따라 하자 보수보증금으로 보수 또는 대체하거나 보증서 또는 보증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든 보수 또는 대체에 따른 기자재대와 경비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3 “구매자”는 발췌(拔萃) 시험검사 기자재의 경우 검수완료 후 납품된 기자재의 품질과 규격이 발췌 검사한 피시험품과 동일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품된 기자재의 품질과 규격이 검사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공급자”는 즉시 “공급자”의 부담으로 당해 기자재를 대체 납품하거나 당해 기자재대를 “구매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5-4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 하자발생 사실이 없을 때에는 “구매자”는 하자보수기간 종료 후 “공급자”의 청구에 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한다.

제 16 조 (계약금액의 결정 및 조정)

16-1 계약금액은 수량, 규격, 납기, 대금지불방법, 품질, 재료가격, 노무비,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른 적정한 관리적 경비 및 이익을 붙여 “구매자”,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16-2 예비부속품으로써 기자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문서에 부속품으로써 기자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6-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결정이 지연될 경우, “구매자”, “공급자”는 상호 협의하여 선제작 또는 납품할 수 있다.

16-4 “구매자”는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후라도 계약금액 결정의 착오 등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6-5 “공급자”는 “구매자”의 가격증빙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 요구에 응하여야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동 증빙자료의 위조 또는 사실과 상이하거나 근거확인 불능의 증빙자료 제출, 제조검정의 은폐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제출자료 확인결과 부적정한 가격이 산출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후라도 상호 협의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6-6 “구매자”는 16-4항 및 16-5항의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인하여 환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에게 지급할 모든 종류의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할 지급금이 없을 경우에는 “공급자”는 “구매자”가 정하는 소정 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 (사급자재)

17-1 “공급자”는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사급자재를 인수하며 인수후의 운반 및 보관관리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공급자”가 진다.

17-2 “공급자”는 사급자재의 인수시(“구매자”의 지시에 의거 “공급자”가 공급업자로부터 사급자재를 직접 인수하는 경우 포함), 신속히 검사하여 품질,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사급자재의 하자 또는 수량의 과부족 등의 이상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구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구매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17-3 “공급자”는 전 17-2항의 검사를 태만히 하거나 또는 검사를 하여도 “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간과하는 경우 사급자재는 정상으로 검사된 것으로 보고 “공급자”는 그 후에 이를 이유로 보완, 보수, 보충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17-4 사급자재의 소유권은, 사급자재에 대한 가공가격의 여하에 관계없이 무상 사급의 경우는 “구매자”에게 있으며 “공급자”가 인수한 후에 이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대물충당 또는 그 대금을 변상하여야 하며, 유상 사급의 경우 “공급자”가 그 대금을 완제하였을 때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한다.

17-5 사급자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그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으며 “공급자”는 신속히 “구매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사급자재에 기인하여 기자재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속히 “구매자”에게 통지하여 그 대책 및 처리 방법에 대하여 “구매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18 조 (금형 및 목형)

18-1 기자재의 제작 및 가공에 필요한 목금형(木金型)은 “공급자”의 비용부담으로 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실제작비는 “구매자”가 동 금액을 생산예정 기자재

수량으로 분할하여 기자재의 단가에 포함하는 방식에 의하여 상각하기로 하고, 목금형비(木金型費)의 계산 및 상각 수량은 “구매자”, “공급자”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18-2 “구매자”의 비용부담으로 제작된 목금형(木金型) 및 상각이 완료된 목금형(木金型)은 “구매자”의 소유로 되며, 미상각된 목금형(木金型)이라도 “구매자”가 그 미상각된 금액을 “공급자”에게 지불함으로써 “구매자”의 소유로 할 수 있으며, 미상각금액 지불 이후의 납품 기자재의 단가는 그것에 포함된 목금형비(木金型費) 만큼 인하 조절되는 것으로 한다.

18-3 상각중인 목금형(木金型)은 “구매자”, “공급자”의 공동 소유로 하며 각자의 지분은 목금형비(木金型費)의 부담분(또는 “구매자”의 경우 상각 비율)으로 하고 사용권은 “구매자”가 갖기로 한다. 또한, 목금형비(木金型費)의 전액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도 소유권은 “공급자”가, 사용권은 “구매자”가 갖는 것으로 한다.

제 19 조 (사급자재 및 목금형 등의 취급 및 처리)

19-1 “공급자”는 17, 18조의 사급자재 및 목금형(木金型)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공급자”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 관리하고 “구매자”의 소유권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2 “공급자”는 사급자재 및 목금형(木金型)을 “구매자”의 승인 없이 기자재의 제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담보, 대여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9-3 “공급자”는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이상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급자재 및 목금형(木金型)에 대한 “구매자”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즉시 “구매자”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이들에 대하여 “구매자”의 소유임을 증명하고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구매자”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그 대금을 완제하여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급자재나 목금형비(木金型費)의 전액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되어 있어 “공급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목금형(木金型)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정이 발생할 경우 필요에 따라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기자재의 공급에 차질을 주지 않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구매자”는 사급자재 및 목금형(木金型)의 보호가 위태롭거나 기자재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공급자”의 동의 하에 사급자재 및 목금형(木金型)의 보관장소를 옮기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9-4 기자재의 납품과 동시에 “공급자”는 사급자재의 수령, 사용 및 잔량의 명세서를 “구매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잔량 및 부스러기 등 제작과정상의 부산물은 “구매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9-5 개별계약의 만료,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구매자”는 “구매자”의 선택으로 “공급자” 및 “공급자”의 외주선이 소유하는 “구매자”의 사급자재 및 기자재의 제작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목금형(木金型)과 기자재의 재고에 대하여 그의 일부 또는 전부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즉시 “구매자”이 신청한 물건을 “구매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19-6 전 19-5항에 의한 양도금액은, 유상 사급자재는 사급가격을, 기자재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목금형(木金型) 등은 상각을 감한 가격을 기준으로 “구매자”,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20 조 (보수용 부품의 공급)

20-1 "공급자"는 "구매자"가 장비생산을 중단하거나 사양변경을 하더라도 납품한 기자재에 대한 보수용 부품의 계속적인 공급을 위하여 단종 후에도 5년간 보수용 부품의 공급의무를 진다.

20-2 "공급자"는 20-1항에 규정한 기간 동안 목금형, 필름, 도면 등 일체를 보관,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 기간 만료 전에 목금형(木金型), 필름, 도면 등을 처분하여야 할 경우에는 "구매자"와 별도로 협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21 조 (제조물 책임법)

21-1 "공급자"는 "구매자"가 발주한 물품에서 제조물 책임법에 규정된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각 호의 사항 등을 최선을 다하여 준수해야 한다.

① "공급자"는 발주품을 원래의 설계 의도나 제조방법 대로 제조 또는 가공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구매자" 또는 "공급자"의 설계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는 "구매자"과 협의하여 합리적인 설계로 대체하여야 한다.

③ "공급자"는 사용자의 부주의, 오사용(誤使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설명· 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공급자"가 이를 직접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드시 "구매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급자"는 발부품을 공급한 후에도 그 발주품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구매자"에게 통보하고 교체·수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2 "공급자"는 발주품의 결함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하여 제3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제기되는 소송 등을 "공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방어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공급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21-3 전 21-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및 소송 등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경비를 지출한 경우 "구매자"는 그 비용을 "공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21-4 "구매자"와 "공급자"는 제조물 책임의 예방 및 사고 발생시 대책수립에 상호 최대한 협조한다.

유첨: ABB 공급자 행동규범

ABB Supplier Code of Conduct

Version 2.0 – Published on 01.01.2014



ABB의 행동규범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ABB는 높은 청렴성 및 지속가능성 기준에 헌신합니다. ABB는 뇌물 공여 및 부패와 같은 비윤리적인 행동에 관해서는 '무관용'의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사의 모든 공급자가 유사한 기준을 준수하고 스스로의 사업을 윤리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합니다. 공급자로서, 귀사는 반드시 모든 해당 법률과 규정, 본 ABB 공급자 행동규범에서 규정하는 제반 요건과 당사에 대한 귀사의 계약 상 의무를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본 ABB 공급자 행동규범은 당사의 공급자로서 귀사의 사업 활동의 바탕에 깔린 주요 원칙을 정의합니다. 위험 물질과 분쟁지역 광물 및 질문에 대하여 문의할 곳 등을 포함하는 보다 상세한 지침은 www.abb.com/supplyingtoabb 또는 www.abb.com/integrity 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 인권

ABB의 공급자로서, 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1 인간의 존엄성, 각 개인의 사생활 및 권리를 존중한다.

1.2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여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거부한다.

1.3 성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이거나 또는 착취하는 몸짓, 언어, 신체적 접촉을 포함하는 행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2. 공정한 노동 조건 및 아동 노동

귀사는 공정한 노동 조건을 보장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귀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1 성별, 연령, 민족, 국적, 종교, 장애, 노동조합 가입 여부, 소속 정당 또는 성적 성향 등을 바탕으로 한 고용 상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2.2 직원의 자유로운 결사 및 단체교섭권을 존중한다.

2.3 귀사의 모든 활동 단계에서 모든 해당 법률 및 규정을 따르지 않는 한 아동 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2.4 어떠한 강제 노동 또는 비자발적인 죄수 노동을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직원이 합리적인 통지를 통해 자신의 근무처를 자유롭게 퇴직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5 직원에 대한 보상을 공정히 하고 현지 임금 규정 또는 단체 협약을 준수하며, 이러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원이 최소한 스스로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직원에 대한 보상을 한다.

2.6 잔업을 포함한 업무 시간이 해당 법규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러한 한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는 업무 시간이 잔업을 포함하여 주당 60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합니다.

2.7 직원에게 주당 최소 하루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는 휴무일이 허용되도록 보장한다.

3. 보건, 안전 및 환경 관리

귀사는 모든 직원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업무환경을 제공하여야 하며,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귀사의 사업을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귀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1 보건, 안전 및 환경 프로그램과 개선을 관리하기 위한 유능한 인원을 공식적으로 선임한다.

3.2 보건, 안전 및 환경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적합한 조직 구조와 절차를 확립한다.

3.3 모든 직원이 이러한 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인식하고 통제 수단의 구현에 대하여 적합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자재 준수 및 분쟁지역 광물

ABB는 위험 물질과 분쟁지역 광물을 포함한 물질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정 상의 요건 및 고객의 요구를 단호히 준수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급자는 ABB에게 제공되는 재화가 모든 관련 규정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요구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귀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1 ABB에게 "ABB 금지 및 제한 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로서 귀사가 ABB에게 공급하는 재화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에 대하여 신고를 한다.

4.2 분쟁지역 광물에 관한 방침을 시행하고 이러한 광물의 원천을 조사하기 위한 실사를 시행한다.

4.3 이와 같은 요구사항에 대한 귀사가 준수한다는 증거에 대한 ABB의 요청에 적시에 대응한다.

5. 경영 윤리

귀사는 귀사의 사업을 윤리적인 방식으로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귀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5.1 모든 형태의 부패, 부당 취득 및 뇌물 수수를 금지하고, 구체적으로 고객 (ABB 직원을 포함하여), 정부 공무원 그리고 모든 기타 상대방에 대한 금전의 지급, 선물 또는 기타 약속이 해당 뇌물 수수 방지 법률을 준수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5.2 독점 금지 및 기타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한다.

5.3 ABB에게 어떠한 ABB 직원이 귀사의 사업에 관하여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재정적 이익의 공개를 포함하여 ABB의 공급자로서 귀사의 활동에 관련된 잠재적인 이해 상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5.4 ABB와 각각의 사업 동반자가 제공하는 모든 기밀/비밀 정보를 보호한다.

5.5 ABB를 포함한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한다.

5.6 국제 무역 규정과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한다.

6. 보안이 유지된 경영

귀사는 귀사의 경영을 보안이 유지되는 방식으로 수행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귀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6.1 테러리즘, 범죄, 전염병 및 자연 재해와 같은 보안 위협에 대한 ABB의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을 구현한다.

6.2 ABB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그 안에서 작업을 수행할 때는, ABB의 보안 절차를 준수하고 모든 보안 우려에 대하여 적합한 ABB 경로를 통해 보고한다.

7. 공급자의 조달

귀사는 재화와 용역을 책임감있게 조달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귀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만 합니다.

7.1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ABB 에게 공급하는 귀사의 공급자를 그들이 본 ABB 공급자 행동규범에서 규정하는 것과 양립할 수 있는 기준 준수에 동의하는 것을 기초하여

선정한다.

7.2 ABB 사무실 또는 공장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는, ABB의 사전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만 업무를 하도급 한다.

8. 검사 및 시정 조치

ABB 공급자 행동규범에 대한 준수를 보장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귀사는 반드시 모든 관련 문서의 기록을 보관하고, 요청이 있을 경우 당사에 근거 문서를 제공하여야만 합니다.

귀사의 준수를 검증하기 위하여, 당사는 귀사의 운영 및 시설을 당사의 비용 부담 하에 그리고 합당한 통지에 따라, 제3자의 지원 여부에 상관없이 감사 및 검사할 권리를 유보합니다. 만일 그러한 감사 또는 검사의 결과로 인해 귀사가 본 ABB 공급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당사가 가지게 되었을 경우, 귀사는 당사의 지시에 따라 적시에 필요한 시정 조치를 취하여야만 합니다. 만일 귀사가 본 공급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사는 당사의 공급자로서의 귀사의 활동을 유예 또는 종료하는 것을 포함하는 귀사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9. 구제조치에 대한 접근

우리의 사업 관계의 맥락 하에서, 만일 귀사 또는 귀사의 직원이 본 ABB 공급자 행동규범이 준수되지 않는다거나, 또는 ABB가 ABB 행동규범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고 믿게 될 경우, 당사는 귀사가 ABB의 이해관계자 보고 경로(ABB stakeholder reporting channels)를 통하여 귀사의 우려를 제기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와 같은 보고 경로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www.abb.com/integrity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ABB는 귀사가 “Power and Productivity for a Better World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한 전력과 생산성)”을 향한 우리의 노력에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Daniel Helmig

Group Senior Vice President

Head of ABB Supply Chain Management